

야간자기주도학습을 하겠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감독교사 순서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이들을 야자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라는 학교관리자는 있지만 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와 강제 0교시가 결국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임을 심사숙고하는 관리자는 없는 상황이다.

'보충수업 희망원'을 놓고 '△△△강좌를 희망한다고 작성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실제 보충수업시간에는 '국영수사과'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한다. 희망자를 받아야 하는 '희망원'에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고,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협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칙이란 없다. 도리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요하고, 서류 조작도 서슴지 않는 주도 면밀함까지 가르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반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원칙'과 '불법'을 배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권 침해

0교시로 표현되는 강제 0교시와 강제 야자는 대표적인 건강권 침해 행위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대학생의 조기등교까지 개선하는 상황에서 성장기 학생들을 좁은 교실에 하루종일 앉혀 두는 것은 거의 학대행위에 가깝다. 실제 많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과연 건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 도시 지역 상당수의 학생들은 강제 야자를 마치고 밤 9시 이후에 다시 학원에 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취침하고 다시 6시정도에 기상을 하기도 한다.

○ 재산권 침해

보충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듣게 하고 돈을 걷는 행위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강제 야자도 마찬가지다. 야자에 명목상의 추가비용이 들진 않으나 관리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 외의 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최근에는 3월에 거의 대부분의 교사를 강제적으로 남겨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와 지역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에게 보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찬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교수-학습권 침해

학생들은 아침 7시 30, 40분에 등교해 밤 9, 10시에 하교한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 일과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꼴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잠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당국과 교육당국은 이를 교사들의 교수능력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강제 보충으로 인해 수업시수가 25시간을 넘고, 강제 야자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에 육박하는 교사들로서는 정규수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거의 묘기에 가깝다. 이런 무리한 운영은 정규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줘 학생들의 무기력 상태가 심화되고 대부분의 정규수업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사-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은 학생 개개인의 시간이다. 학생 개개인은 그 시간동안 자신이 선택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청소년-학생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지역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학교구조는 더 큰 문제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신이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에는 요구가 없고, 지역인프라는 계속 결핍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나마 있는 지역의 활동들도 거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3) 대안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이 희생과 봉사, 내일을 위한 투자라는 말로 미화되는 것은 모두 학벌사회와 대학선발 구조 때문이다. 학벌사회의 지양은 학벌을 없애야 가능한 문제이고 이는 대학선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바로 국립대학평준화와 더 나아가 대학평준화다. 워낙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

는 정책이 중심이 돼 왔었기에 실제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실가능한 안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기 전에도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은 선택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제약

학생회의 회의 개최권, 학생회의 조직 원리라 할 수 있는 학생회칙 제·개정권, 학생회의 의제 설정권, 학생회 조직권(선거에 관한 제반 권한) 등이 모두 학교당국에 위임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생회 개최를 결재하고, 학생회칙을 바꿀 수 있으며, 의제를 설정하고, 선거를 학생부 또는 특활부 교사들에게 위임시킨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회 내에서 학생회장 보다 더 막강하며, 직선제 학생회장은 학교장의 지시를 따른다. 조직위의 조직이 하부조직을 지휘하는 형태의 이 조직체계는 전형적인 군사조직 체계로서(또는 관료조직 체계로서) 학생들에게 모든 결정과 권리행사에는 더 높은 심판자가 있다는 논리를 내면화시킨다. 이 모든 권리의 위임은 학생에게 교실에서의 학습만을 학습으로 인정하고, 지식의 전수만이 교육이며 오직 대학이 목적인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 정당화 된다.

학생은 학교의 모든 일을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운위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학생회 조직은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서 예결산권과 회칙 제·개정권, 회의 소집권, 집행권 및 학교 제주체와의 교섭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는 사회의 지향을 학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이 검비된 실천을 통해서만 학습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프로그램화 해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학생에게 주인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 교사·학부모와 더불어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

육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교수와 학습을, 학급을 통한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죽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살아있는, 생동하는, 실천 속에서 숨쉬는 지식을 전수 받아야 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선, 생동하기 위해선, 실천 속에 숨쉬기 위해선 지식은 소통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하며, 또 잘못된 것에 저항해야 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저 떠돌아 다니던 온갖 '설'이 진실이고자 하는 체계화 된 지식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천과 땀, 투쟁이 배어 있다. 지식은 학교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식의 땀 속에 배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 조건들, 상호작용들은 그저 하나의 결론으로 자리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교육적으로 훨씬 가치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채호 선생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민족주의자들의 친일, 민족주의의 한계에 대한 간파,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한 것이다. 칸토어의 집합론은 보편수학의 꿈, 근대적 합리성의 정신이 가장 충만하던 시절에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수학이 무한의 측정에 도전한 시대정신이 숨어있는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자신만만하던 서구 근대를 대표하는 합리주의가 1차 대전으로 금이 가는 시대의 우연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교 자체가 민중의 교육욕구와 자본의 노동력 확보가 맞물려 운동하고 있는 체제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는 지식에 숨어있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하고,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 경험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수와 학습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가 배우기 위해 연대한다. 학생자치는 교수-학습의 질을 바꾸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루는 아이들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레이리는 대화를 이야기 했다. 대화를 위해 그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촘스키는 학생이 청중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공교육체제는 전수를 떠나 연대하고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

3. 비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학생들에 대한 체벌, 용의 복장 규제를 통한 몸매에 대한 통제 등 역시 입시교육에 의해 강제되는 것들 중 하나다. 일 대 감당할 수 없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환경, 말로 설득할 수 없는 비합리한 학교운영, 전혀 아무런 상담-복지-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 없는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암기숙달을 통해 평생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체벌과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모에 의한 체벌이 용인되고, 학교에 의한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다. 또 일제 시대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 속에서 학생다움에 대한 어설픈 합의가 깔려 있는 사회다.

하지만 다양한 의사가 존중되고, 논의와 논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적 미래에는 체벌과 통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구성원의 생각을 제약해 오히려 사회적인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에 의한 모든 종류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몸매에 대한 통제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생활규정은 이런 논쟁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교육주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칙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생활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학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생활규정은 구성원의 대표 또는 일정기준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구성원의 대표기관 결의 또는 구성원의 직접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학교의 생활규정은 그렇지 못하며 결국 준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준수 사항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이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범법자는 있지만 민주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게 만든다. 하지만 폭압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에게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관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생활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구성과 집행으로 인해 폭력 및 학교질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힘에 의한 유지는 다시 힘에 의한 학생간의,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규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가 제시되고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 운영해 볼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보면

- 교사-학생 소위원회 구성(1-1, 10명이상, 교사회 대표단과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 논의
- 교사회와 학생회의 민주적 논의(교사회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회는 학급회의-학년회의-대의원회의 절차를 통해 안 마련) → 교사-학생 소위원회 통해 논의
- 학운위 최종 심의의 단계를 거쳐 제정할 수 있다.

4. 제안 그리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가 있다. 나이에 대해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 광고는 나름의 매력이 있다. 원래 입시는 그저 고등교육에 진학할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시는 대학의 철저한 서열화와 사립학교의 문제로 인해 중등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버렸다. 게다가 학벌을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구조가 이를 철저하게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입시교육 하에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더 결정적인 축은 있으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시교육에 사로잡힌 학생인권의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입시교육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그저 “내 아이, 우리 반 학생, 유아독존 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공동의 실천이 요구된다.

학교내 인권과 차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장 은 속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담실장)

학교내 인권과 차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1. 들어가며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에 의한 어떠한 억압도 아이들에게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19세기말 스페인 자유교육의 선구자 페레의 비권위적인 사고를 극단적으로 대변한다. 어떠한 명분도 권위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 시킬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권위의 형태는 ‘폭력’이다. 페레는 권위에 반대하므로 ‘폭력’에 반대한다. 아이에게 사용하는 폭력이 제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이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권위에 아이를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정당화된 체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또한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내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아직도 아이들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기 보다는 교육을 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운동은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80년대 후반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권이란 의제에 조금씩 눈떠가는 과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2001년 11월에 들어 비로소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사항은 어떠한가? 아이들은 과중한 학과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학생자치 활성화나 학교내 인권은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권고를 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²⁾.

이는 보고서 작성시 교육관련 단체등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작성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련 당국자들은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아직 시기상조란 이유로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다.

2004년에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가 제개정되어 학교내에서의 기본적인 학생인권 보장과 폭력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 17대 국회에 기대 해본다.

2. 학교내 학생인권의 현황 (2003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4월 교사가 여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교사의 지속적인 체벌에 힘들어 하던 고3학생이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림 하는 영상도 공개되었고, 체벌과 관련해 양호교사도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체벌과 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사회 문제가 되었다.

2)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자료실(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에 올라와 있는 번역문 참고.

우리사회의 폭력문화가 학교내에서도 여전히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담사례를 통해서 학교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문제, 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 2003년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학교 내에서의 폭력적 체벌

학생인권 기획 특집 “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

1) 통계분석

연도 (총건수)	1997년 (총 812건)	1998년 (총 567건)	1999년 (총 301건)	2000년 (총 280건)	2001년 (총 269건)	2002년 (총 371건)	2003년 (총: 680건)
종류							
교사 문제	259건 (32%)	213건 (37.6%)	119건 (39.5%)	117건 (41.8%)	88건 (32.7%)	108건(29.1%) 면접:2건 전화:82건 사이버:18건	총: 291건(42.8%) 면접:10 건 전화: 115건 사이버:166 건

교사문제는 체벌뿐 아니라 혼지, 자질, 언어폭력, 성추행도 포함되는 총체적인 범주를 다루고 있다. 학교문제 호소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통계 680건 중 교사문제 291건으로 42.8% 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화상담(261건)중 주로 부적격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항을 호소하는 폭력적 체벌과 자질문제, 성추행을 요청하는 사례만 102건(39%)에 이른다. 20건의 면접상담중 10건이 교사체벌 문제로 민원소송을 고려하는 내용이었다. 사이버 상담과 청소년 인권상담 내용 대부분이 체벌문제 와 교사의 언어폭력을 호소하는 건으로 학교현장의 인권 의식 부재와 폭력적 학교문화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체벌을 묵인하는 학교와 사회에 '학생인권'의 존엄성을 알리고,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2) 학생인권 침해 사례 상담내용

[사례 1] J 여중 학생폭행 민원소송 사례

: 학교측과 중재시도 - 학부모 요구사항, 대화 거부

5월 상담 의뢰중 심각한 교사체벌로 학생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면접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학교측과 조중, 중재를 위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든 중재와 학부모의 요구사항, 대화를 거부하였다.

① 사건내용 요약 : 교사의 '미친놈' 발언에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생폭행, 학생인권 철저한 파괴 심각성 더해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지난 5월 14일 모 여자중학교(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교사의 학생폭행건과 관련한 내용의 면접상담을 받았다.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하던 중에 학생이 숙제를 잘못 제출하자 모 교사가 "미친놈들"이라는 발언을 했고, 학생들이 그 발언 그대로 공책에 낙서를 하고 웅성거리자 교사가 학생의 "버릇없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구타했다. 피해학생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십여 차례 구타했고 학생의 머리채를 세계 움켜쥐고 흔들며 복도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교사가 욕박지르고 학생이 대답하지 않자, 주먹으로 뺨을 수 차례 구타하여 이가 부러지며 얼굴이 시벌절개 부어 올랐다.

치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부위가 5군데이며, 학생은 2주 진단을 받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교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② 학교방문 내용 : 교사끼리 두둔하는 학교, 학생인권 안중에 없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해당학교 교감을 면담했으나 면담과정에서 교감은 (5월 23일 오후 3시경 학교장은 미리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어 교감 면담했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른다" "공개사과요구에 대해서는 그 교사와 학생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생

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직원회의를 할 의향도 없고 공개사과나 공개해명을 할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③ 사건의 왜곡 : 피해학생 비방 협박, 학부모 요구사항 무시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들이 수 없이 올라와 피해학생이 학교에 가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부모는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공개사과와 공개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학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부분은 무시하고, 교사의 교권만 내세우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④ 학생인권침해 실태: 권위주의적 통제교육,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

이 사건을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은 없고, 교권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 책임자들과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완고한 권위주의가 통하는 구시대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학교에 체벌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감정적 체벌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례 2] 체벌후 전학자퇴처리, 교사의 편익 위한 극단적인 선택

-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 측면에서 재고 되어 한다 -

[호소내용] : 이유없이 '안경벗어' 구타, 체벌후 '징계유예' 통보, 자퇴' 강요

내담자 자녀(중학교 2학년, 남학생)와 친구들 여러 명이 컴퓨터 game을 쉬는 시간에 하다가 장난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에 격분한 교사가 다 나가라고 하면서 자녀만 불러냈다. 다짜고짜 '안경 벗어'라고 욕박 지르면서 얼굴, 목, 어깨 부분을 마구 때렸다. 자녀는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교사는 막무가내로 폭행을 했고 그 와중에 아이가 교사를 밀쳐내고 도망치려고 시도하다가 서로 부딪쳐 넘어졌다. 결국 자녀는 뛰쳐나왔고 교사는 학생이 자신을 쳤다며 경찰에 학생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이런 사건으로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다.

내담자는 며칠 뒤 자녀와 함께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 했다고 무조건 빌었다. 그러나 교사는 전학 아니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했다. 그 이후 자녀에

게 '강제유예'라는 통보를 하고 자퇴처리 하라고 강요했다. 학교측의 강압적 처분으로 대안학교로 전학을 준비하는 중에 중학교 측에서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기재 하지 않고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곤란했다. 학부모는 이렇게 편법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싶다.

(3) 처벌을 위한 과도한 체벌,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호소내용] 실수는 인정하지만, 각목으로 때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자녀(초6학년) 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 체격이 작고 약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5학년 아이에게 자주 맞고 다녀서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라”고 말을 해서 자녀 친구와 5학년 아이가 서로 싸워 크게 다쳤다. 5학년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싸우게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께 항의를 했다. 그리고 난 후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불러서 많이 혼나고 왔다. 담임 선생님이 교장 면담 후 오시더니 아무 설명 없이 각목으로 갑자기 자녀 머리를 수 차례 때려서 머리에 혹이 여러 군데 났다. 자녀도 자기가 시켜서 싸움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아프지만 괜찮다고 한다. 학부모도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나 각목으로 교사가 자녀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학생부당징계 사례

1) 통계분석

연도 (총건수)	1997년 (총 812건)	1998년 (총 567건)	1999년 (총 301건)	2000년 (총 280건)	2001년 (총 269건)	2002년 (총 371건)	2003년 (총: 680건)
학생 부당 징계	22건 (2.7%)	5건 (0.9%)	4건 (1.3%)	6건 (2.1%)	7건 (2.6%)	5건(1.3%) 면접:1건 전화:3건 사이버:1건	총: 7건(1.0%) 면접:0건 전화: 5건 사이버:2건

전체 상담 중 상담건수는 미비하다. 학생 징계까지 가기 전의 상담이 많아서 일

듯 싶다. 학교 내 학생 징계는 대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더 이상의 해결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생징계 중 가장 문제점은 선도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쉽다. 바람직 한 것은 선도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선도위원들은 대상자가 교육 중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처리함에 있어 과도한 감정 노출이 되어 그릇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 내용분석

[사례 1] 학생부장선생님이 싫어 전학하고 싶은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니. 딸아이가 학생주임에게 3번이나 걸렸다. 한번은 남자친구 담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등교 길에 교문에서 걸리고 두 번째는 외박을 하고 무단결석을 3일이나 했다. 이번에는 새벽5시까지 술을 먹고 학교에 가다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걸렸다. 어제 술을 먹고 12시에 귀가를 했는데 아침까지 냄새가 났던 모양이다. 담임선생님과 그는 그동안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찾아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맡겨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있다. 아이는 상처를 받아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퇴를 강요하고 있다. 선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할거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문의하고 싶다.

[사례2] 입시를 앞두고 이중처벌로 인해 전학통보를 받은 고3 남학생

아이가 흡연, 귀고리 착용으로 교사에게 지적을 심하게 받았다. 너무 심하게 다루자 아이가 순간적으로 통제가 안 돼 교사 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 같다. 이 사건으로 교사가 아이를 학생과에 넘겨 반성문을 쓰게 하고 교내 봉사를 받고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담임, 피해교사, 교장은 퇴학까지는 만류하고 학생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 주임과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4 : 3으로 아이를 퇴학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감을 주 측으로 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확정하고 학생 선도규정 시행 규칙 4조 5항에 의거하여 학생을 퇴학시킨다는 공고를 학교에 부쳤다. 고3인데 퇴학이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아이 아버지가 교장실에 가서 빌고 선처를 구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는 통보 명령을 받았다. 두 달 후면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는데 자녀가 매우 불안해한다.

3) 맺는말

상담 사례중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안 규약 해석에 있어서 학교 선도위원회측의 불합리한 조항의 적용으로 학생들이 부당하게 자퇴를 강요당하거나, 원치 않는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정학제도는 없어졌지만(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예시안에서 정학제도 부활), 비합리적이고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부당한 중징계 처리를 내리든지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과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징계 통보로 학생의 장래를 구속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 상담실에서는 작년에 이어 2004년도 학생인권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생활규정안, 선도규정안, 징계규정 지침서 등을 요청한 후 내용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 징계와 학생인권 침해 요인 부분이 없는지 규명하는 검토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 각 단위학교 학칙규정안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부분을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자치 단체 활성화를 통한 주체적인 참여로 바람직한 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긍정적이고 학생인권을 최대한 반영한 바람직한 생활선도 규정안 제시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다. 학교폭력문제

1) 통계분석

연도 (총건수) 종류	1997년 (총 812건)	1998년 (총 567건)	1999년 (총 301건)	2000년 (총 280건)	2001년 (총 269건)	2002년 (총 371건)	2003년 (총 680건)
학교 폭력	64건 (8%)	18건 (3.2%)	19건 (6.3%)	11건 (3.9%)	11건 (4.1%)	15건(4%) 전화:13건 사이버:2건	총:41건(6.0%) 면접:6건 전화:30건 사이버:5건

집단 폭력문제는 과거 몇 년 간의 추이를 볼 때,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흐름에 기인하여 집단 폭력에 해당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성추행도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 본다면 더욱 많다. 왕따와 집단 폭력이 함께 행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어떤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하였다.

2) 내용분석

[사례 1] 학교에서 징계받은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을 강제로 싸우게 해

중학교 2학년의 자녀가 정학 당한 중3 학생들에 의해 강제로 친구를 때리게 하고, 때리는 모양이 시원찮다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게 하는 일을 당했다. '누가 센지 한번 붙어봐라', 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지 않자 발길로 차고 한 아이를 지목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패라고 요구했다. 무릎을 꿇고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중3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폭력서클에 속해 있고 골목에서 아이들 금품을 빼앗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이미 수 차례나 있었고 이 사실을 학교에 불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있으며 같이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는 이번 한번만 참고 넘어가자고 아무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

[사례 2] '무서운 여중생들' 연약한 친구 성추행

지난 4월말 서울 Y중 1학년인 A(13)양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에게 이끌려 학교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그전에도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 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혔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A양에게 “옷을 벗을래, 맞을래” 라고 위협해 옷을 벗기고 A양의 성기에 사인펜을 긋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들은 심지어 지나가던 아이들을 불러 “구경하라” 고까지 했다.

A양은 이 일을 겪고도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한 학생이 며칠 뒤 생활지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학교측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등교를 못한 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A양의 아버지는 1일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550만원을 합의금이 라고 들고 온 가해학생 부모들의 태도와 학교측의 무성의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이 가시지 않는다” 며 “지금은 아이가 많이 진정돼 학교에 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지역의 한 복지관에서 10일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피해 학생 부모가 선처를 요청해왔고 기말고사 등 산적인 문제가 많아 가해 학생들 처리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단지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 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3] 아이가 폭행을 당해 다쳤는데 같이 징계를 받다니...

방학 이틀 전에 체육시간이 끝나고 싸움이 붙어, 내담자의 아이가 20~30대 정도를 맞아 눈이 툭툭 붓고 찢어져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도였는데 담임은 싸움을 해서 다쳤다고 전화를 했다. 선도위원회에 학칙대로 처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가해학생이 전교 1등이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충동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변호를 했다. 나아가 우리 아이도 같이 멱살을 잡았으니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학교측에서 노골적으로 가해학생의 편을 든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정중하게 사과는커녕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란 말만 반복한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몹시 억울하다.

3) 맺는 말

청소년 폭력문제는 인성문제와 학교부적응 문제와도 깊은 관련사항이 있으며 폭력으로 발생한 2차 정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는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에 대응하여 일괄적인 자퇴강요 진술서를 강요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 요인이 되고있다. 사이버 세대의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으로 인한 학교 폭력(집단폭력, 왕따, 성폭력)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Off line에서의 학생들간의 갈등과 오해가 On line 상의 사이버 협박과 비방으로 이어져서 철저히 왕따가 된 학생의 자살 건은 민원소송을 의뢰했지만 상담으로 다시 자녀를 살려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또한 학생들간의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청소년 문제이며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야할 민감한 사례였다고 판단된다.

3. 학생인권 문제의 현실적 상황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의미는 학생 자치권의 보장, 학교운영에 학생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장, 선도 규정과 생활규정 예시안에 학생의 민주적 참여의 보장, 학교내 징계절차의 학생의 변론권 보장 등 학생의 적극적 의견개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체벌 문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의적의미의 학생인권 문제보다는 학생인권 침해의 기본이 되는 체벌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았다.

① 학생체벌 사고발생시 학교측의 대응 상황

2003년 한해 심각한 폭력체벌사례를 호소하는 상담건수가 폭증하여 전체의 42%를 넘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상담사례를 취합하여 '학교 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체벌을 사회적 인권 문제로 환기시킨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과 민원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도 교사에게는 경고조치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은 오히려 전학과 퇴학을 강요당하고, 학부모는 '교권'에 도전한 몰상식한 사람으로 왜곡 폄하되고 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상담으로만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상담실에 의뢰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학부모와 피해학생의 호소를 무시한 채 관계적인 행정처리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체벌로 인한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금전적인 댓가를 학교 측에 요구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건이 속출하여 문제가 더욱 왜곡되고 학부모는 남모르는 이중고통속에 시달리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② 교육법령 제도 내에서의 학생체벌 문제

교육기본법 제 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사의 체벌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항의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건이 잇달으면서, 체벌금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수많은 논쟁 속에서 한국의 입법 및 행정적 입장은 결국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교육법 시행령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단서를 근거로 체벌을 인정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체벌시의 절차규정을 제도화하였다.(체벌규정안) 이로서 학교현장에서는 실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었고, 일반 교사들도 아무런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체벌을 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개정된 청소년 현장 내용 중에 '청소년은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권리 조항에 의하면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력적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교육관련법 제도와 교육정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교운영의 관료성과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획일성에 있다고 본다. 이

에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③ 체벌 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체벌불가피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① 체벌은 '벌'의 일종이고, ② '사랑의 매'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며, ③ 교사는 직무권한으로서 '체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한국의 세 가지 제도영역, 즉 사법제도, 교육현장 및 대중매체 등에서 다양한 논거들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논거는 ① 「사회통념론」, ② 「교육상 불가피론(사랑의 매)」, ③ 「교권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거들은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모호할뿐더러 인간의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김은경).

④ 사법제도와 사회적 통념

사회적으로 폭력행위는 사법처리 된다. 또한 제소자의 인권도 보호받고 있고, 군대에서 조차 체벌을 금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정당화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적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체벌은 곧 "사랑의매"라는 오래된 전통적 관념으로 뿌리깊게 남아있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동들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근대사회에 들어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아동 또는 미성년자들은 사회에서 여전히 종속적·부차적 지위를 지녔다. 이러한 관행은 비로소 최근에 들어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인권운동이 확대되면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부터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힘입어 교사의 체벌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자녀체벌도 불법화시킨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심희기, 1999)³⁾, 이러한 국제

3) 체벌금지의 원칙이 국제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유럽(영국제외)과 동유럽 국가에서는 학교체벌(corporal punishment in school)이 불법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폴란드에서는 1783년에, 프랑스는 1882년에, 네델란드에서는 1958년에,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1968년에, 그리고 1970년대에는 러시아와 독일에서 학교체벌이 사라졌다. 북미지역에서는 캐나다가 학교체벌 불법화를 달성했으며, 그 밖에 이스라엘, 일본(명치시대 교육령, 1879년)에

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는 오히려 “체벌 불가피론”이 강력하게 비등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현 한국의 학생인권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다.

4. 학생인권문제와 관련한 참교육학부모회 사업

1) 사업명 : 학생인권사업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	사업진행내용
체벌금지 법제화 운동	3월~ 11월	체벌금지 법제화	상담실	*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에 구체적인 체벌금지를 명시하도록 함 * 헌법소원 제기
학생들이 가고싶은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3월~ 11월	체벌없는 좋은사례 보급	상담실	* 모범(좋은)학교 소개 * 좋은 사례 보급화 * 인권교사상 : 체벌없이 교육한 성공 사례 * 체벌 대안교육 방안 : 학생지도 방안 / 생활평점제 / 질서공동체 교육방안 / 교육벌 제도화 * 단위학교내 삼주체 - 간담회 / 토론회 / 모의법정 (재판) / 역할극
학생체벌 금지 캠페인	3월~ 11월	체벌에 대한 의식 변화	상담실	* 스티커 제작 : 학교내 배포, * 팻지 제작 : 청소년 단체, 시민교육 단체 배포 * 교사·학생·학부모 체벌금지 선서식 * 체벌금지,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소책자 지침서 발간

서도 학교체벌은 불법화되어 있다. 이미 '학교체벌'의 불법화를 달성한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처음으로 '부모의 자녀체벌'까지 불법화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 서유럽 여러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심희기, 1999: 20).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영국도 1986년에는 교육법을 통해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켰다. 특히 유럽공동체출범 이후, 영국에서의 체벌허용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8년 영국의 부모의 자녀체벌허용법제가 유럽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선고된 후 영국의회는 학교체벌은 물론, 부모의 자녀체벌 불법화를 지향하는 입법적 움직임에 착수했다.

○ 사업 실행 일정

내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벌 금지 법제 화	헌법소 원제기	헌법소원 가능성여부 확인	법률가 와 간담회	헌법 소원 추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법률안 마련		교육 부 면담	국회 의원 면담	법률 개정 추진						
체벌 없는 학교 만들 기	모범학 교사례 조사	각 지부지회 모범학교 사례조사										
	사례 보급화	체벌없는 학교 언론홍보&사례보급										
	인권교 사상	인권 교사상 제정										
	체벌대 안방안 마련	체벌대안방안 연구 토론 회 기획 회의										
	단위 학교 3주체 토론회	학생/교사단체와 연대해 단위학교 3주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10개학교이상)										
체벌 금지 캠페 인	스티커 제작	제 작 기 획 회의	스티커 제작	배포								
	체벌 금지 선서식											3주체 별금지 인권선 언식
	홍보소 책자 발간	기획회의	홍보소 책자 발간									
각 지부지회 체벌금지 서명운동 및 캠페인 연중활동												

2) 사업명 :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안 개정사업
 “교문앞에서 학생의 인권은 멈춘다”

○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	사업진행내용
생활규정안 분석조사	1월~10월	생활 규정안에 인권침해 부분이 없도록 한다.	상담실	* 생활규정안, 선도규정안, 징계규정안, 지침서 등을 요청해서 분석 작업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 부분이 없는지 검토 작업을 실행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개선 사업	1월~10월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	상담실	* 핸드폰 압수 / 두발, 복장, 용의 검사 / 불시 가방검사 사례조사
바람직한 '생활선도 규정안' 제시	1월~10월	바람직한 규정을 제시한다.	상담실	* 학생들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 사업 실행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활규정안 분석	각시도교육청 자료요청		자료 분석	인권침해조항 개선 사업					교육부 건의	언론	
인권침해 조사	지부지회 참여요청	단위학교	인권침해조사 및 상담사례 수집						개선 요청	홍보		
바람직한 규정 제시	바람직한 규정안 연구						규정안 제시	학교내에서 예시안이 학생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5.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방향4)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관련법중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인권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고,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의 개선도 학생인권과 관련이 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급식의 문제점도 학생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나 생명권과 관련이 있다. 또한 현재의 학벌주의 사회문화와 대학입시제도도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의 개선은 그 자체로서 이미 논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논의까지 포함시킬 경우에 너무 포괄적인 논의가 되므로 이 글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체벌금지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제7항을 삭제하고,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좌 동)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내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4) 2003년 참교육학부모회 법개정토론회 하승수변호사 발제문 요약

(2)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의 금지

0교시 수업, 반(半)강제 야간자습, 소지품검사⁵⁾, 일기검사,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 등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행위주체들이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개정(안)
없음	제18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등) ① 다음 각호의 행위들은 학교내에서 금지된다. 다만, 학생들의 특수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수업시각 시작 30분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들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도서관, 교실 등을 야간에 개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3. 학생들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행해지며, 사전에 검사 대상 학생들의 범위와 검사방법에 대해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성적, 외모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5. 기타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항의 행위 이외에도 헌법과 국제조약이 정한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5)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소지품검사, 가방검사, 일기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바깥의 사회에서 함부로 소지품검사, 가방검사, 일기검사를 한다면 아마 인권침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가방검사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소지품 검사나 가방검사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지품검사나 가방검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소지품 검사나 가방검사가 남용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나 가방검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소지품검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3) 교칙,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두발, 복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이 학생들의 참여하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규정	개정안
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규칙) ① (좌 동) ②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학칙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는 학생인권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재 학칙의 제정, 학생징계, 학생의견의 표명, 학생자치활동 등은 학교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없이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회가 학칙제정,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

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	개정 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및 학생회장, 당해 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및 학생회장 , 당해 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한다	그리고 제32조 ④, ⑤를 신설하여,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며, 다만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이,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는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상담 체계 구축의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정도만 제시한다.

현행 규정	개정 안
	제18조의3(인권교육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제18조의2에 규정된 행위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글을 마치며

채찍으로 길들이는 말 중에는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털끝만 닿아도 달리는 말, 또는 피부에 자극이 와야 달리는 말, 마지막으로 뼈속까지 아픔이 느껴져야 달리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품도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학교현장에서는 성품의 다양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장 손쉬운 통제 방법의 하나인 매로 아이들을 다스린다. 자극을 받아야 달리는 말처럼 말이다.

체벌 논쟁이 일때마다 찬반논쟁이 뜨겁다. 체벌옹호론자들은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추락하고, 과밀학급 속에서 불량학생 때문에 선의의 학생이 피해를 보며, 의욕 있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어 교육할 의지를 잃게 만들고, 결국 교실붕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또한 체벌 반대론자들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몰아 붙인다. 체벌을 금지한 외국과는 오래된 문화적 차이를 말한다. 과연 체벌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일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해괴무은 논쟁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더구나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폭력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

체벌을 해서라도 교실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아이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체벌이 문제행동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폭력을 양산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그런데도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교육적인 체벌이 '사랑의 매'로 둔갑되어 정당화 되어 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체벌찬반 논쟁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소인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법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폭력문화를 양산하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내의 체벌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인식의 변화를 이끌수 있기에 미성숙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뿌리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인식과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법제도로써 체벌금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문앞에서 학생의 인권은 멈춘다'란 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이제는 학교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권위에 의해 억압당하며 교육받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도로써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개선하는 노력을 할 때이다.

가난에 갇힌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김 정 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가난에 갇힌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⁶⁾

1. 개괄 : 빈곤아동 100만명 시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빈곤층 아동의 경우만을 좁혀 놓고 보면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① 매년 버려지는 아동 1만여명

90년대 초중반까지 가정에서 버림받아 보호가 필요하게 된 요보호아동은 연간 4000~5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지난해 10,222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등 2000년 이후 3년간 연평균 1만여명의 아동들이 버림받고 있다. 하루에 28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중 44%가 ‘빈곤·실직’이었고 43%는 ‘미혼모 아동’이 차지했다.

▶ 1백명이 버려졌을 경우 어디로 가나 → 양육시설(고아원등) 47명, 입양 24명, 가정임시위탁 24명, 소년소녀가정 지정 5명

② 결식아동 최소 수만명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아침·저녁 지원)의 대상자는 2003년 1만6270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중식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대상이 30만5668명이었다. 정부에선 순수

6) 중앙일보는 지난 3월 22일부터 5회에 걸쳐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빈곤아동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대형 탐사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본 발표문은 당시 취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동’이란 표현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한 의미의 결식아동은 복지부 지원대상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복지에선 중식지원대상자의 상당수도 실질적인 결식아동에 해당한다며 결식아동이 2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쪽 주장의 평균치를 잡아도 결식아동이 최소수만명에 달한다는 결론이다.

③ 빈곤아동 100만명

빈곤아동이란 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때문에 교육이나 보건측면에서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빈곤아동의 규모에 대해선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일단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7세 이하의 아동은 31만4000여명이었다. 또 실질소득은 최저생계비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이 4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해체가정에서 약 20여만명의 아동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잠재빈곤 아동으로 분류된다. 이 모두를 합치면 빈곤아동의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산출되며 이는 전체 아동 1157만명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2003) 2000년 기준으로 빈곤계층은 539만명 → 여기에 빈곤가정내 아동비율(0.247%)을 곱하면 빈곤아동규모는 133만명

▶ 최근 빈곤아동 발생의 구조적 요인 → 신용불량자 급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장기불황에 따른 자영업 몰락

④ 가정해체와 빈곤아동

취재팀이 공부방 지원단체인 '부스리기 사랑나눔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빈곤지역 공부방 27곳에 다니는 아동 4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40.1%가 부모가 이혼·별거·사별한 해체가정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에서 해체가정의 비율은 6.7%였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등 가정해체 현상과 빈곤아동 문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편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2000년 16.7%였던 편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이 2002년엔 27.7%로 높아졌다.

▶ 빈곤의 여성화 : 남편과 결별이 소득원 상실로 이어져 가족해체로 형성된 여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 높아,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에 비해 3.83배(보사연, 2002)

2. 교육빈곤 : '개천의 용'은 이제 옛 말

취재팀과 국가인권위는 공동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했거나 중·고교를 중퇴한 빈곤층 남녀 10명을 심층면접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학교가 너무 싫었다. 학교에서도 내가 그만두니까 좋아했을거다"(고1 중퇴자)
 "부모님이 내 성적표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실업고 졸업자)
 "아무도 나에게 꿈을 물어보지 않았다."(중1 중퇴자)

인권위 연구팀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즉 과거와 달리 최근 빈곤아동들은 단순히 생계곤란 만으로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며 가정·학교·사회가 어릴 적부터 방임하면서 스스로 '학교 간다고 별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은 학력주의 사회에서 학창시절 겪는 교육빈곤은 학업부진·학업중도 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성인이 돼서도 저소득 직종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즉 '빈곤의 대물림'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① 가난하면 공부도 못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서울시의 지역간 교육격차 분석결과(이혜영, 2003) 중상 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부모가 교과서의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거나,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하는 학습지원이나, 자녀의 일과를 챙겨주거나 건강유지를 위해 체력단련이나 간식에 신경을 쓰는 등의 일상적 지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당연한 결과겠지만 서울시의 일부 저소득 지역의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비율은 3.6%~4.5%로 나타나 전국 평균 비율 1.1%보다 훨씬 높았다(서울시 교육청, 2002). 또 취재팀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계층에선 2003년도 수능시험 상위권이 16.5%, 수능하위권이 13.5%였는데 소득 상위계층에선 수능상위권이 29.8%, 수능하위권이 2.5%로 나타났다.

② 교육빈곤 심화시키는 사교육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의 현실은 빈곤아동들과 일반아동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취재팀 조사결과 빈곤지역 공부방의 초등학생중 학원에 다닌다는 아동은 21.2%로 전국 평균 83%보다 턱없이 낮았다.

또, 노동패널 분석에선 소득상위계층의 월 사교육비는 소득하위계층의 네배에 달했으며 특히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가구는 소득 하위계층은 2.2%에 불과한 반면 소득상위계층은 17.5%나 됐다. 사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소득 상위계층은 고액과외 위주라면 소득 하위계층에선 어린 아동의 태권도·미술 학원비등이 위주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특히 실업고 진학에서 계층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하위계층의 38.3%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반면, 상위계층은 13%만 갔다. 빈곤아동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4년제 대학 진학율도 소득 하위계층이 43.2%인 반면 상위계층은 59.1%였다.

한마디로 경쟁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고학년이 될 수록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부산의 저소득지역 초·중생 3132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48%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③ 남들 공부할 때 나는 아르바이트

취재팀이 중산층 출신으로 서울대생 A군(24)과 빈곤층 출신으로 여행업체 계약직 사원인 B양(22)의 고교시절 하루 일과를 비교해봤다. A군은 아침 7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18시간이 학교수업·자율학습·독서실 공부로 채워졌다. A군의 아버지는 대학교수, 어머니는 대학강사로 어릴 적부터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반면 실업계고에 다닌 B양은 오후 4시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B양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고정수입이 없었으며 어머니는 이혼후 소식이 끊겼고 단칸방에서 동생 둘과 함께 사는 처지였다. A군은 "어릴때부터 공부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며 가끔씩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B양은 "한번도 과외나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며 "여건이 안되니 공부 못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

다"고 말했다. 결국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현재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 J군(13) 4년전 IQ 115 → 지금은 80 / 박미정 과장 "부모가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쓰다보니 자녀 학업이나 생활태도 등에 관심이 없다. 방치되다 보니 아이들 지능도 떨어지고 생활이 무기력해진다"

3. 보건 : 몸도 마음도 아픈 아이들

대체로 가난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빈곤아동중 상당수는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데다 병의 치료 시기를 놓쳐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 발육도 부진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취재팀의 의뢰로 지난해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17세 이하 남아의 평균신장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129.8cm였는데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선 122.4cm로 7.4cm의 차이를 나타냈다. 체중도 100만원 이하의 가구의 아동은 27.9kg이었지만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32.6kg으로 4.7kg의 차이를 보였다.

① 아파도 병원에 못가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서울 Z초등학교에선 저소득층 아동 415명 가운데 80명(19.3%)이 빈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빈혈증세는 평균 2~3%선이다. 또다른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Q초등학교는 지난해 전교생을 상대로 충치검사를 했는데 전국 평균의 두 배인 62%가 충치를 갖고 있었다. 이 학교의 보건교사는 "치료시기를 놓쳐 생니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빈곤아동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도 제한적이다. 취재팀이 공부방 아동 406명을 조사했더니 '지난해 아팠지만 병원에 못 간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35.7%나 됐다. 이들중 상당수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못갔다는게 공부방 선생님들의 설명이다.

▶ 결식문제: 공부방 아동 406명중 33.1%가 지난해 챙겨줄 사람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 밥을 굶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

② 마음의 병이 더 문제

빈곤은 정서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사연의 분석결과 12~17세 청소년에게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느꼈느냐'고 물었더니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선 2.7%만 '언제나 그랬다'고 답한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선 8.5%나 '언제나 그랬다'고 답했다.

이처럼 우울증·산만증·불안증 등과 같은 정서장애는 빈곤아동을 괴롭히는 큰 문제다. 2000년 서울시 교육위에서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 307명을 조사한 결과 10.1%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정서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들은 주의가 아주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며, 눈을 지나치게 깜빡거리거나 이유없이 몸을 비트는 '틱(Tic)'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게 일선 보건교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성북정신건강센터에서 서울 지역 9개 공부방의 296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한 결과 36명(12.2%)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장애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방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학교보건원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경제상황이 나빠 부모가 모두 생계에만 매달리는 가정의 아이일수록 주의력 결핍·행동장애 등을 보인다"고 밝혔다.

③ 열악한 위생 보건 환경

단칸방에 온 식구가 모여사는데다 화장실조차 없는 판자촌의 열악하고 비위생적 환경도 큰 문제다. 취재팀 조사결과 공부방 아동의 36.0%가 집에 목욕·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한달에 한번 이하로 목욕한다는 경우도 5.4%나 됐다. 어른들과 방을 함께 쓸 경우 어른들의 흡연때문에 감기·기침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았다. 또 빈곤아동은 집에서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빵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경향이 있어 장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공부방 아동 10명중 한명(10.6%)은 거의 매일 한번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율(12~17세 남아) : 100만원 미만 가구 13.2%, 100~299만원 2.2%, 300만원 이상 5.9%

▶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빈곤 → 위생 영양 미흡 → 신체기능 저하 → 저생산성 → 빈곤 / 빈곤아동의 가계도를 조사할 경우 이처럼 여러 대에 걸친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 현상이 종종 나타남

4. 사회적 소외 : 가난보다 서러운 차별

가난은 아이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킨다. 빈곤아동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취재팀이 만난 빈곤아동들은 친구 엄마가 "앞으로 재량 놀지마"라며 친구 손목을 잡고 돌아설 때(서울 중계동 10세 여학생), 방과후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가고 자기 혼자만 외톨이가 됐을 때(서울 화곡동 16세 남학생)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빈곤아동에겐 자신들의 고민을 상의할만한 사람도 별로 없다. 공부방에 다니는 초·중고생중 '걱정거리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56.3%였고 이가운데 29%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 선생님과 상의한다는 학생은 1%에 불과했다.

① 왕따

취재팀이 공부방 아동들을 조사했더니 초·중생 응답자 387명중 22%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위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일반 학생의 왕따 경험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 초등학생 61명에게 '학교에서 함께 짝궁하기 싫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18%(1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든 이유는 '못살아서'(5명), '지저분하거나 아파서'(5명), '짝의 엄마가 짝에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해서'(3명), '공부를 못해서'(1명) 등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층 아동들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추정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② “또 너냐”

대안고인 서울 성지고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대상 학생 162명에게 ‘어른한테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거나 받은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95명(59%)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이중 53명은 ‘또 너냐’를 가장 자주 듣는 모멸적인 말로 꼽았다. 이밖에도 이들이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는 모멸적인 언사는 다음과 같았다.

“친구 잘 사귀어라” “너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학교에 한 번도 안 오시냐” “너 ‘임대’살지” “너 때문에 애들이 물드는거야”

또 학교에서 교사가 던진 무심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 대치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M양(15)은 우유를 잘 안마신다. 초등학교 때 방학식날마다 선생님은 M양을 교단에 불러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료 급식용 우유 한 박스를 안겨줬는데 그 때마다 느껴야 했던 수치심 때문에 우유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고 한다. 또 담임선생님이 “학비 면제자 손들어 봐”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학교다니기 싫어진다는 고교생(17)도 있었다.

③ 문화격차

공부방 아동에게 ‘지난 1년간 가족과 함께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가본 경험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61.1%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한번도 가 본적이 없다는 아동들도 57.6%나 됐다. 이같은 일반아동과의 문화격차때문에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제대로 끼어들지 못한다는 아동들이 많았다. 공부방 아동의 79%는 집이 좁아서 학교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부방 아동들중 28.8%는 한달 용돈이 1000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유행하는 놀이기구를 갖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반응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계층별 정보격차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1000가구중 46.7%(전체가구 평균 77.9%)만 PC를 갖고 있었다. PC가 있어도 동영상을 띄우기 힘든 펜티엄Ⅱ급 이하의 기종이 45.3%에 달했다. 또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한 비율은 38.8%로, 전체 가구평균(69.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숙제를 이메일로 내라고 요구할 정도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런 계층별 정보격차는 교육기회와 경제활동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장래희망 비교 : 일반 중·고생 - 1. 교사 2. 의사 3. 컴퓨터 분야 직업 4. 기업가(삼성경제연구원, 2003) / 저소득층 중·고생 - 1. 기술전문직(정비사·요리사·미용사등) 2. 연예인 3. 자영업자 4. 교사(취재팀 조사)

④ 아빠가 무서워요

지난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중 편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36%를 차지했으며 그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부모들이 쉽게 이혼하고 경제난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이 늘면서 경제능력없이 아이들 혼자 맡아 키우는 일부 아버지가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자를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무직 25%, 단순노무직 18%, 서비스·판매직(9.5%)등으로 저소득 직업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단순 노무직 학대자는 2001년 277명에서 2003년 534명으로, 무직학대자는 570명에서 723명으로 늘었다. 반면 사무직 학대자는 같은 기간 55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

5. We Start 운동 : 가난 대물림을 끊자

빈곤아동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폭력·공포·학대·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은 성인과 달리 현재의 소득이나 사회적 위상이 스스로의 책임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자녀의 지위가 결정되는 ‘가난 대물림’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반을 해치고 계층간 갈등

이 격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끝으로,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봤을때 우리 나라 출산율이 2002년 1.17명으로 OECD국가중 최저이며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미 출산된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호는 시급한 문제다. 빈곤아동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생산성과 노동력이 저질화가 초래돼 성장동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① 열악한 아동복지 예산

올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5086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보육예산이 4107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아동복지예산은 979억원에 불과하다. 빈곤아동을 100만명이라고 봤을때 1인당 연간 9만7천원 꼴이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인 Head Start는 아동 1인당 연간 투입비용이 7000달러(약 829만원)에 달한다. 선진국과 국민소득 수준의 차이를 감안해도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이 낮은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국가보고서 심사에서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수준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향후 정책적 과제: 빈곤가구의 가족 및 아동상담서비스 제공, 차상위계층으로 교육지원 확대,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빈곤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등 빈곤아동 서비스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검토, 한부모가정에 대한 취업지원·아동양육부가급여 등 실시 등

② We Start 운동

50여개 민간단체와 중앙일보가 함께 펼치고 있는 이 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 빈곤층 아동의 삶의 출발(Start)을 도와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사회운동이다. 동시에 'We'는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로 이 두 분야의 아동빈곤 퇴치에 핵심 영역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We Start운동은 미국의 Head Start나 영국의 Sure Start 에서처럼 빈곤예방은 가급적 어린 시기부터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학전 빈곤아동에게 인지발달 교육을 시키는 Head Start의 경우 수혜아동이 비

수혜아동에 비해 IQ나 학업성적 면에서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율도 높았다고 한다. 프로그램 투입비용에 비해 범죄율 감소·생산성 향상등으로 사회가 장기적으로 거둬들이는 이득은 9배나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We Start운동은 빈곤아동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 구체적 사업방향

■ 'We Start'마을 시범사업

- 서울·경기지역에서 몇몇 곳을 'We Start 마을'로 선정하고 빈곤아동을 0~3세, 4세~6세, 초등학생의 세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연령대별 특성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 학교·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 등 연계망 구축

- 필수적인 복지·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문화적 결손을 치유 예방하고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구축 / 보건소·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실시

-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가족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의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영화관, 레스토랑, 야구장 등)로 1% 나눔운동 전개

■ 동네마다 '희망의 집'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역아동센터·청소년복지시설등을 대폭 늘려 방과후 아동들이 맘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 마련

- 학교·학원·폐과출소·복지관·주민자치센터·종교시설등에서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해 수리·개조후 오픈

- 각 센터와 개인·단체·기업 결연사업 / 학습지도 자원봉사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 있다

박 준 표
(PyO, 하자센터 Staff · 문화기획자)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학생과 청소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권 하향이 만 19세로 논의 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소년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깊게 살펴보면 학생과 미성년, 대학생과 성인의 개념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청소년 선거권과 관련된 논의와 노동권 관련 논의 2가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1. 청소년 선거권 : 만 18세 VS 만 19세

선거를 하고 싶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활동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선거를 하고 싶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표면적인 권리 행동이자, 가장 큰 권리행사 중 하나인 선거권 - 즉 정치참여의 권리를 누군가 제한하거나, 허락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권도 이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인 만큼 인간의 천부인권과 같이 보편성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수히 진보적인 단체를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라 하여도, 청소년들의 권리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제한되어 있다. 저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판단 혹은 평가되기 때문

이다. 청소년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성숙'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 해석됨으로써 현재의 삶과 생각, 판단, 자위적 결정권이 모두 미완의 상태로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2. 만 18세로, 아니면 만 19세로?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좀 더 많은 이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정확히 말하자면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제정된 만 20세 규정이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사회 위치의 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한 후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의 구체적인 나이가 18세이던, 19세이던, 혹은 15세이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참정권 확대운동처럼, 투표권이 사회참여의 권리라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권 하향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꼭 한번쯤 묻는다. "만 18세로, 아니면 만 19세로?"

1999년에 청소년 선거권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서 이전에는 없던, 만 19세 선거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한국에서의 '만 19세 선거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폭력성을 생각한다. 만 18세와 만 19세 논란의 중심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중요 지점이 존재한다. '만 19세 vs 만 18세' 투표권 논란은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계층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3. '고등학생 vs 대학생' 구조의 함정

만 19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만 18세를 선거권 허용 나이로 적용할 경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직 '학생'인 고3의 경우 이 사회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하향 연령은 만 19세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능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판단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판단, 즉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각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면 왜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자.) 같은 이유의 반대적 측면으로, 고3을 벗어난 대학교 1학년의 나이인 만 19세는 선거권이 주어져도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시되는 나이 만 19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나눔과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 결과이다. 고등학생이 졸업식을 끝내고 대학을 입학하는 몇 달 사이에 변태를 거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나이와 고등학생/대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있고 난 후, 실제로 법적으로 만 18세였던 성인영화 관람 연령이 단계적으로 만 19세로 맞춰지기도 했는데,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숙/미성숙의 판단이 실질적인 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고등학생/대학생,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 결과에서 나오는 만 19세로의 선거권 하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 18세와 만 19세의 논란은 단순한 1살의 나이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미성숙하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가, 청소년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현재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만 19세는 성숙과 미성숙의 단계를 나누는 나이의 기준을 한 살 낮추는 것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다.

4.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 다시 짚기

문화연대, 학벌 없는 사회, 두발제한 반대운동을 했던 청소년 웹 연대 With 등은 '낮추자'(<http://www.downage.net/>) 라는 선거권 하향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낮추자'는 오늘 12월 대선에 온라인/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끊임없는 연대도 모색을 하고 있다. 대선 유권자 연대나, 참여연대, 전교조에 함께 사업 제안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대 모색의 한 방안이다. '낮추자'의 모임이 이와 같은 연대의 폭을 넓혀가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바로 이 사회를 함께 '책임'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두발제한 반대 운동과 같이 청소년의 힘으로만 이 운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은 나이와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정치적 채널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 자신이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확대는 학교 안의 질서도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정함과 미성숙의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 청소년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 문제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사회에 함께 하는 존재라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논리인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5.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가능성

(1) "학생이 돈이나 밝혀?" - 10대가 노동이 필요해? : 10대 노동자의 필연성

임상수 감독의 영화 '눈물'(2000)은 4명 청소년의 삶을 그리고 있다. 10대가 볼 수 없는 10대 영화, 10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던 이 영화의 구석에서 '청소년 노동'을 발견할 수 있다.

무단히도 "바다"를 찾아가던 4명의 '가출'생활은 고스란히 생존과 연관이 되어있다. 영화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섹스, 강간, 가스 흡입 등이 생존을 지켜볼 틈 없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도 4명의 청소년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있다. 기동서방 역할을 하는 남자친구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시도하는 여자아이, 술집의 뼈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왜 '눈물'나는 노동을 하고 있었을까.

청소년 상담 건수 중 상당수가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문의 전화라고 하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은 어김없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성매매 가해자 처벌에 집중해야하는 터라, '돈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10대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매우 힘든 모양이다. 엄청난 매춘 조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을 성매매 시장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조건에서, 10대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 '돈'이다. 영화 '눈물'의 청소년들처럼 가출을 해서 생존을 해야 하건, 멋진 옷을 입어야 하건, 노래방을 가야하건, (불법이지만 엄연히 행해지고 있는 경제 행위인) 술을 마시고 싶거나 담배를 피고 싶더라도 어김없이 필요한 것은 '돈'이다. 세상 어디에도 청소년에게 '무료'로 '재화'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통신 상품 ting 과 bigi 가 등장한 한국 사회는 10대들에게 엄청난 소비를 요구하고 있다. 10대들에게 요구되는 소비만큼, 10대들도 일자리, 노동이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활동 주체로서 10대가 소비생활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10대들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2) "교육, 그래 경제 교육" : '학생'으로의 획일화

'아르바이트 "생" 모집'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아도, 10대 노동자를 '학생'이라고 지칭하는 어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10대 노동자 대신 '학생'을 만나고 있다. '학생'을 만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은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놓이는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 혹은 '배움일 덜 된 상태'의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흔히 학교에서의 학생은 체벌과 폭력에 노출되어있고, 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하기에 노동의 현장에서도 '체벌'이나 '폭력'을 일상시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 이는 10대가 노동자로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지칭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마이뉴스 토론방에서 진행했던 10대 노동권과 관련된 온라인 토론을 보면 '학생'으로의 담론이 더욱 거세다. 청소년 노동권을 '청소년기는 성장의 시기임으로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11.5%)는 의견보다 '청소년 노동권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고,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88.5%)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토론을 살펴보면 여전히 학생으로의

확실화는 변하지 않고 있다.

토론을 살펴보면 10대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나 같이 청소년 노동권의 필요성을 '경제 교육'에 맞추고 있다. 10대 시절에 어렵게 돈을 벌고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절약'을 배울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0대를 - '절약'을 배워야하는 존재로 가정하면서 10대의 노동을 권장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의로 까지 확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적 성격의 10대 존재 규정'은 현재의 노동하는 10대의 삶을 긍정할 수 없게 만든다. 10대들의 노동은 사실 '연습'이 아니고 '실제'이며, '경제 교육'은 부수적인 효과이지 10대 노동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적어도 아르바이트 '생'이라는 이름을 벗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을 함께 쓰거나, 10대 노동자라는 단어가 등장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노동권, 권리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 :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가능성

1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얼마 전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가 노동부에 적발되었듯이, 휴무수당이나 월차를 요구하는 등의 것은 거의 꿈에 가깝다. 일반 상점 같은 곳에서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단순 노무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쟁의나 항의, 혹은 업무상 불만을 사용자가 듣는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별 다른 압력이 되지 못한다. 언제나 이들의 단순 노동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임금체불, 폭력, 휴무수당, 월차 휴가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노동자의 공급과 일자리의 수요가 균형을 갖지 못하는 것, 노동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가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과 사용자의 배려를 기대하기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뭉칠 필요성이 제기 되는 이유는 이미 법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제도의 보완과 확충을 논의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는 어떤 형태의 조합이나, 쟁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혜를 모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지역노동조합의 가능성이다. 아르바이트 임금의 취약성 때문에 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한 지역에 사는 10대 노동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지역적 범위는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경우, 개개인의 노동자 혹은 한 사업장의 청소년 노동자들이 쟁의를 벌이거나 파업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하면 그 쟁의의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결합되어 있다면, 노동력 수급이 가져오는 10대 노동자의 발언권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청소년 지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용자가 10대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10대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기 힘들 것이다.

(4) 즐거운 저항

10대에는 '공부'를 하며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 또 창업교육까지 열심히 시키는 학교도 있는 한국의 합의되지 않은 '청소년 노동권'의 대한 이야기를 쓰다보니 글의 범위가 '청소년 노동권의 필연성'부터 '경제교육의 함정'과 '청소년지역노동조합'의 이야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YMCA 일하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가이드와 상담 및 고발을 받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만든 KYEC 한국청소년비즈니스 연합회, 역시 청소년들이 만들어 매년 워크숍을 열고 있는 청소년 벤처포럼이 운영되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하자센터에서도 '알바센터'라는 체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10대들을 위한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 '웹 사이트 구축' 능력 등 10대들의 다양한 노동력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10대들의 일거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10대들은 알바센터를 통해 얻어진 경험에 대해 작업 보고서를 쓰고, 임금의 일정 부분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기금에 헌납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10대들의 능력과 노동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자신의 노동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면서, 수입의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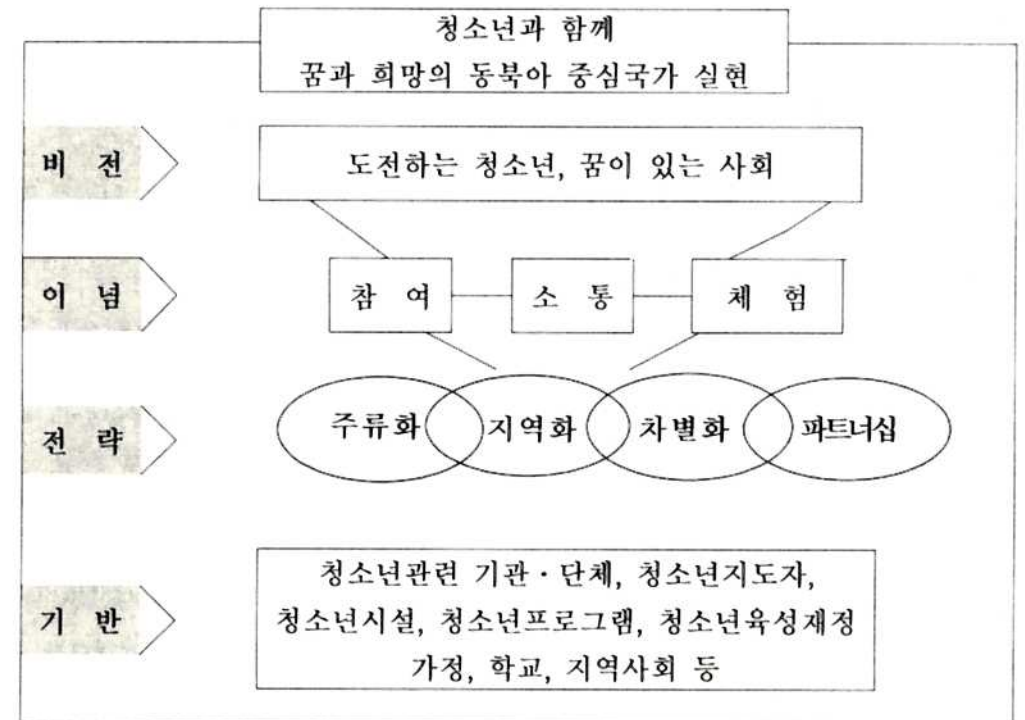
자, 영화로 시작했으니 영화로 끝내보자. 만약 '눈물'의 10대들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환경'이 있었다면, 그들의 가출 생활은 어땠을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과 장치들이 있었다면, 청소년 성매매에 뛰어들 사람은 몇이나 될까. 청소년 노동권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오늘도 불안한 노동 환경에서 반말과 욕설을 들었어야 할 '아르바이트 생',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법에 일말의 항거도 하지 못하는 1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역노동조합이 생기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친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

오 지 철
(문화관광부 차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I. 비전과 추진전략



청소년육성 5대 정책과제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II. 세부 추진과제

1.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1-1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의 정책참여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매년 5월)
 - 의제 선정, 회의, 평가 등 전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보장
-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운영 활성화
 - 16개 시·도 및 시·군·구와 청소년단체·시설에 설치
 -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 공청회, 설문조사, 인터넷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시 청소년 참여 제도화

1-2 청소년의 시민·자치권 향상

□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 청소년의 참정권의 국제수준 확대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인권소위원회'를 신설 추진
- 「청소년 신문고(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 청소년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할인제도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의 차별대우 철폐 지속 추진

□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 추진
- 청소년인권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 인권캠프, 대중매체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1-3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자원봉사 하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 추진
 - 시·군·구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 지역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정보 공유 등 연계협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의무참여제도 강화 방안 검토
 - 현행 20시간인 중·고생 자원봉사 의무활동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최소시간 이수제」 도입 방안 검토
 - 진학 및 취업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청소년 봉사활동 터전 인증제 및 청소년 자원봉사 안전보험제도 도입
 - 「청소년자원봉사 주간」 제정·시행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확대

- 청소년동아리 축제·경진대회 지원 확대
-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사무소,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방 추진
- 청소년동아리 협력학교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동아리 활성화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2-1 청소년활동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특성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 우주항공과학 분야 수련활동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서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가칭) 건립 추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및 도심권내 유스호스텔 등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증설 지속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및 지원 강화
 -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 시범 수련거리 개발·보급 및 소외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 청소년지도사 검정합격자 전문연수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거리 및 청소년지도사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운영 지원
- 민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건립, 수련활동설비 구매, 수련시설 리모델링, 수련시설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운영 지원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종합 연구·평가체계 구축
 - 청소년 시설이용 요구도, 해외 우수시설 등 연구·조사
 - 연차별 시설 운영 백서 발간 및 우수사례 보급
 - 청소년평가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을 평가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 생활권·자연권·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연계운영 체계 및 지역사회와 시설의 연계체제를 개발, 운영

□ 청소년활동시설 다양화

-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 기존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청소년활동공간 확충
 - 청소년이 선호하는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장 등 레포츠시설 건립
 - 해양레포츠 훈련장 건립
- 학교 및 공공시설 주말 개방

2-2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청소년단체의 전문화·특성화

- 설립목적 등에 따른 청소년 단체별 특성화 추진
- 청소년단체별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단체 연계협력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등과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성, 운영
- 청소년단체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 학교시설의 청소년단체 주말 위

탁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청소년단체 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운동 등 단체활동 참여 적극 권장
- 청소년단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 우수청소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공공 프로그램 위탁
 - 청소년단체 재정 건실화 여건 조성
 -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 여건 조성(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 각종 세제 개선(부가세 및 지방세 감면 방안 마련)
- 청소년단체협의회 기능을 단체간 공동협력사업·연합사업 중심의 고유기능 및 회원단체 활동 지원기능 중심으로 강화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 중복·세분화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합리적 조정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개발·운영
- 우수 청소년지도사 선발·포상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대 추진

2-3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특성화·다양화

□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청소년활동 종합인증제 실시
 - 봉사활동, 탐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집단합숙활동 등 영역별 국제수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영역별·단계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 발급
 - 진학 및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청소년의 문화복지 격차를 해소
-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원, 매월 1회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청소년수련거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수련시설간 프로그램 정보 교환 및 공유 촉진

-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청소년 여행벨트(Youth Travel Belt)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도·농 청소년 공동 문화행사 추진
- 청소년 해양·환경·산림·농촌체험활동 및 호국수련활동 등 지원

2-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연계, 「청소년문화 ZONE」으로 지정,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확대 및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활성화
- 지역문화원과 연계하여 시·군·구 전통문화 지킴이 제도 운영
- 청소년 책읽기 운동 사업 지속 추진
- 초청공연, 찾아가는 공연, 일반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간의 공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소외청소년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마련
 -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의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가칭)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 및 교재, 평가지표 등 개발
- 교부금 등 기존교육관련 재원 및 문화예술 관련 기금 등 문화예술교육 추진 재원 확보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보

- 각급 학교 교원 재교육, 활용
- 초·중·고교 국악강사·연극강사 등 풀(pool)제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 문화예술인의 역할 제고

□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애니메이션, 영상, 인터넷방송 등으로 특성화된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 영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등 분야별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2-5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문화 진흥

□ 청소년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개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DB 정보 서비스 제공
- 청소년 과학·기술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의 정보능력 개발

- 건전한 사이버환경 구현을 위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및 청소년의 정보선별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정보능력함양 사업 확대
- 농어촌 청소년, 복무 청소년 등 주된 정보소외계층 청소년별로 정보교육 참여·지원 사업 실시

□ 청소년기관·단체 정보화 및 지도자 정보화 지원

- 청소년기관의 정보화사업 지원 확대
- 청소년지도자의 정보화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2-6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 청소년 국제교류 기반 구축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 설치·운영(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와 연계)
-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국제교류 특성화 청소년시설 지정·운영
- 국제인턴십,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추진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확대 및 다변화 유도
- 청소년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소년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행사 참가 또는 개최 지원
- 취업관광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WHP) 운영 활성화

□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민간청소년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 남북 청소년 예술제, 평화캠프, 조국순례 대행진, 체육대회, 문화 및 역사유적지 답사 등 남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시행
- 남북청소년 만남의 집 개설 추진

□ 교포청소년 및 지역청소년 교류 활성화

- 교포청소년 초청,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생활상 이해와 자부심 고취
- 청소년단체간 교류 활성화
- 지역간·도농간 청소년교류 확대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진출 연계서비스 추진

□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 인턴 취업 지원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및 청소년비즈쿨(BizCool) 설치·운영

□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확대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소년인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시설·단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추진
- 청소년 소비자교육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신용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고3 청소년 사회적응활동 지원 확대 및 여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 체계화

□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강화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청소년 통합교육과 취업확대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후견인 지정과 가정위탁보호 강화

3-2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

- 영세민 밀집지역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지원 확대
- 장애청소년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통합교육 강화
-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확대

□ 농어촌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 농어촌 청소년의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확대
-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보조 확대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범부처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 대도시 지역내 교육·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

-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결손 보충·예방, 정서발달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 유아·청소년(학생) 대상 복지 프로그램 확충 등 지원

3-3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 지역단위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산업체 부설 장·단기 직업훈련기관 및 대안교육적 성격의 국립직업훈련시설 등에 별도의 훈련과정을 편성·운영
-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확대

3-4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와 청소년상담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내실화 및 인성교육 강화 추진
- 잠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 활성화·내실화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및 학급단위의 공동체 활동 강화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추진

4.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4-1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 청소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 청소년 관련시설·놀이용품 및 놀이기구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안전교육 의무화
-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점검체제 구축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의 연령별 표준체력 기준을 제시하고 체력등급별 인증서 발급하는 「청소년 체력 인증제」 도입 추진
 - ※ 미국은 대통령체육위원회에서 3등급의 청소년 체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2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보호기반 확충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민간기업의 청소년 보호운동 참여 제도화
- 유해환경 위반 범칙금의 청소년 보호사업 활용

□ 청소년가출 예방·선도 및 보호

- 가정문화운동 전개 및 청소년가출 예방활동 강화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쉼터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 중장기 보호시설로서 가출청소년쉼터를 신규로 건립, 치료형 보호시설과 대안학교형 보호시설로 발전
 -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추진

4-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차단 강구
- 청소년 유해환경 지표개발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유해요소 근절

-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유입 청소년유해 불법정보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민간단체 자율정화활동 지원을 확대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보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추진

- 게임·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사이버중독 예방·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4-4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성비행 대책 추진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감시 및 보상체계 강화
- 약물중독 청소년의 장기치료·재활병원 지정·운영 등 시스템 정비

□ 청소년 성보호 및 성비행 예방

- 청소년 성매매 행위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정교육 실시
-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진학·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성비행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4-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

-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 강화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청소년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폭력 예방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폭력을 조장하는 유해매체 추방 캠페인 전개
- 폭력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의 재활·선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학대 예방 및 보호 내실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청소년학대신고센터」 신고망 홍보
-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전문화하며, 청소년 학대 구제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5.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5-1 청소년 관계 법령 및 조직 정비

□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 「청소년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청소년복지를 증진하

기 위한 법 등을 하위법으로 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

-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중앙정부 청소년행정 조직 개편 및 강화

- 청소년육성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이나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청소년행정조직의 합리적 개편 방안 강구
-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분야별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 연계·협력기능 강화
- UN 등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개발지표를 개발하여 청소년육성정책에 활용하고 평가를 정례화하는 등 청소년육성정책의 과학화·체계화 추진

□ 지방 청소년행정조직의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조직 확충 및 기능 강화
- 지방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 조성 및 확충
- 지방 청소년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5-2 청소년 원 스톱 지원체제 구축

□ 지역별 청소년육성 기능의 통합적 운영 추진

- 지역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지역사회내 청소년육성 관련 기구 및 단체의 연계 또는 통합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 청소년상담 및 법률구조, 문화활동, 취업 및 진로, 자원봉사 등 관련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연결서비스(Personal Advisor)로 발전

□ 청소년 상담체제 완비

- 시·군·구별 청소년상담실 설치 완료를 추진하고, 학교등 지역사회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전문상담사 및 자원봉사 청소년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멘토 시스템 구축을 추진

5-3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

□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충

- 주5일제 대비 청소년활동 수요 대처 등 청소년 육성사업비 소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필요(2003년 9월 기준 약 3,000억 원 조성)
- '03년 정부예산 대비 0.022%에 불과한 청소년육성 국고예산(257억 원)의 연차적 확대 필요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방법 및 사업구조의 개선

- 기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공제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익사업 전개 및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대
-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정책적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

5-4 범국민적 참여 확산

□ 청소년 대통령특별회의 개최

- 의제 선정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전 과정에 청소년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 청소년 육성 관련 국가적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여 범정부적 차원 및 민간단체가 함께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
 - ※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운영 사례 참고

□ 청소년사업 공모제 시행

- 연중 청소년,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업 공모제를 시행
- 시민이 건의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청소년정책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실시,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

□ 청소년육성 범국민운동 전개

- 청소년단체, 종교·시민·문화단체가 연대하여, 청소년 인권 보장·안전·인성교육·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년육성 추진
- 부모역할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후견인 맺기 운동 등을 순수 민간운동을 추진 하되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17대 국회, 청소년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 설문조사 결과

정 국 진
(청소년기획팀)

2004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17대 국회 청소년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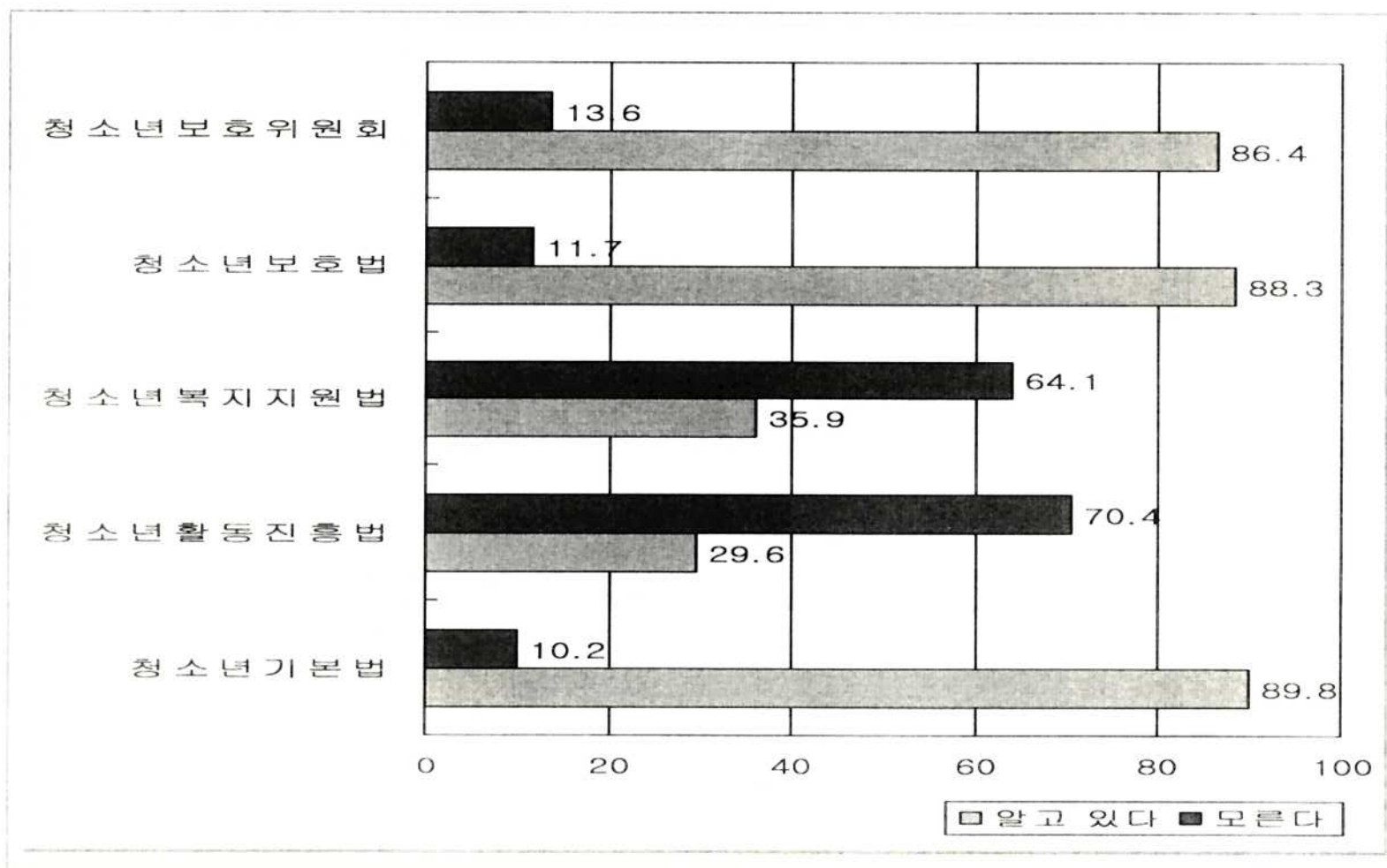
17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발표

개 요

- ◆ 조사기간 : 2004년 5월 11일 - 2004년 5월 13일
- ◆ 응답자수 :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중 206명 응답.
 - 열린우리당 122명
 - 한 나 라 당 71명
 - 민주노동당 9명
 - 자 민 련 2명
 - 정당 미기재 2명
 - 민 주 당 0명
- ◆ 문항별 통계 와 분석
- ◆ 통계수치는 %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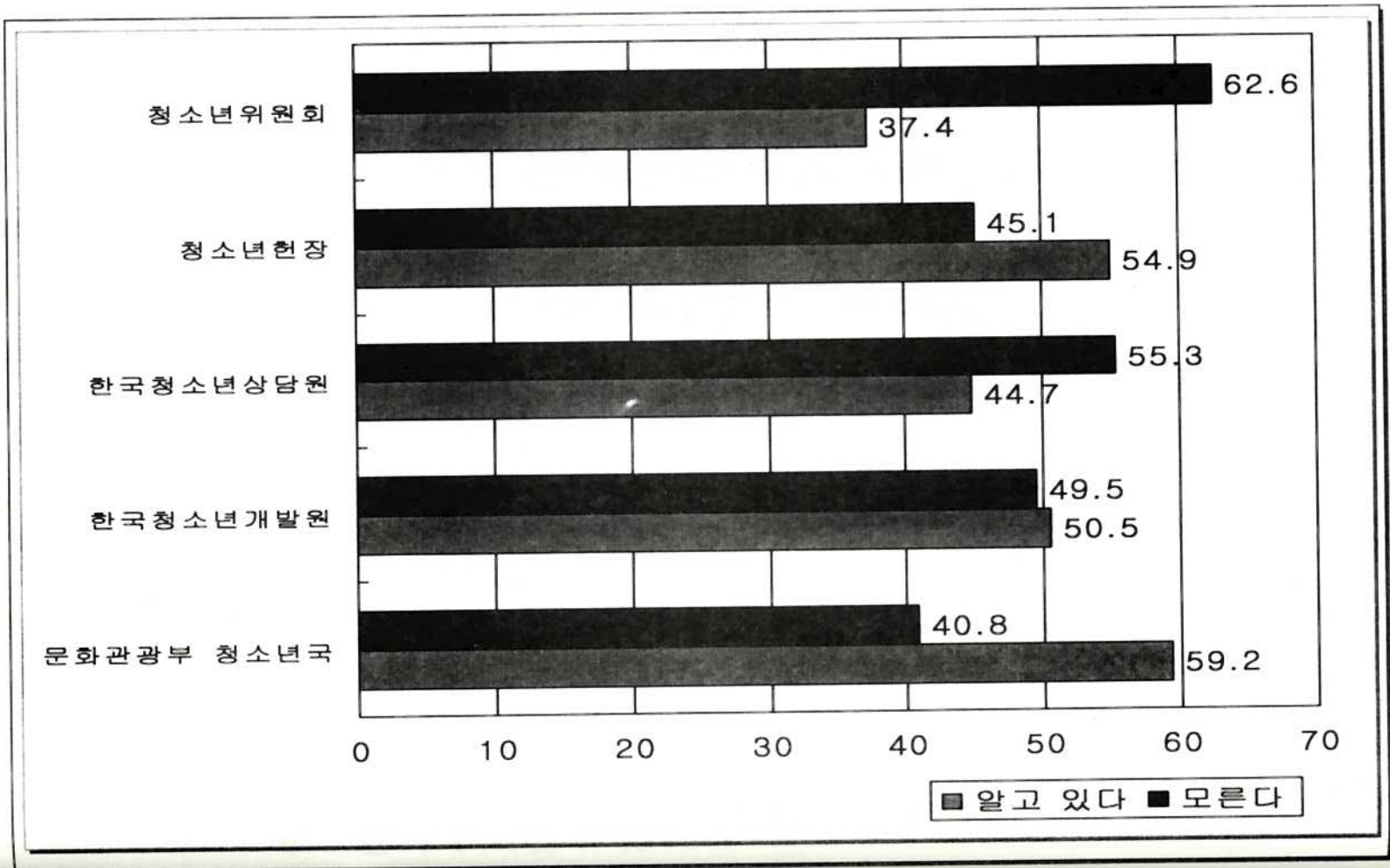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1. 청소년 정책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책기구, 활동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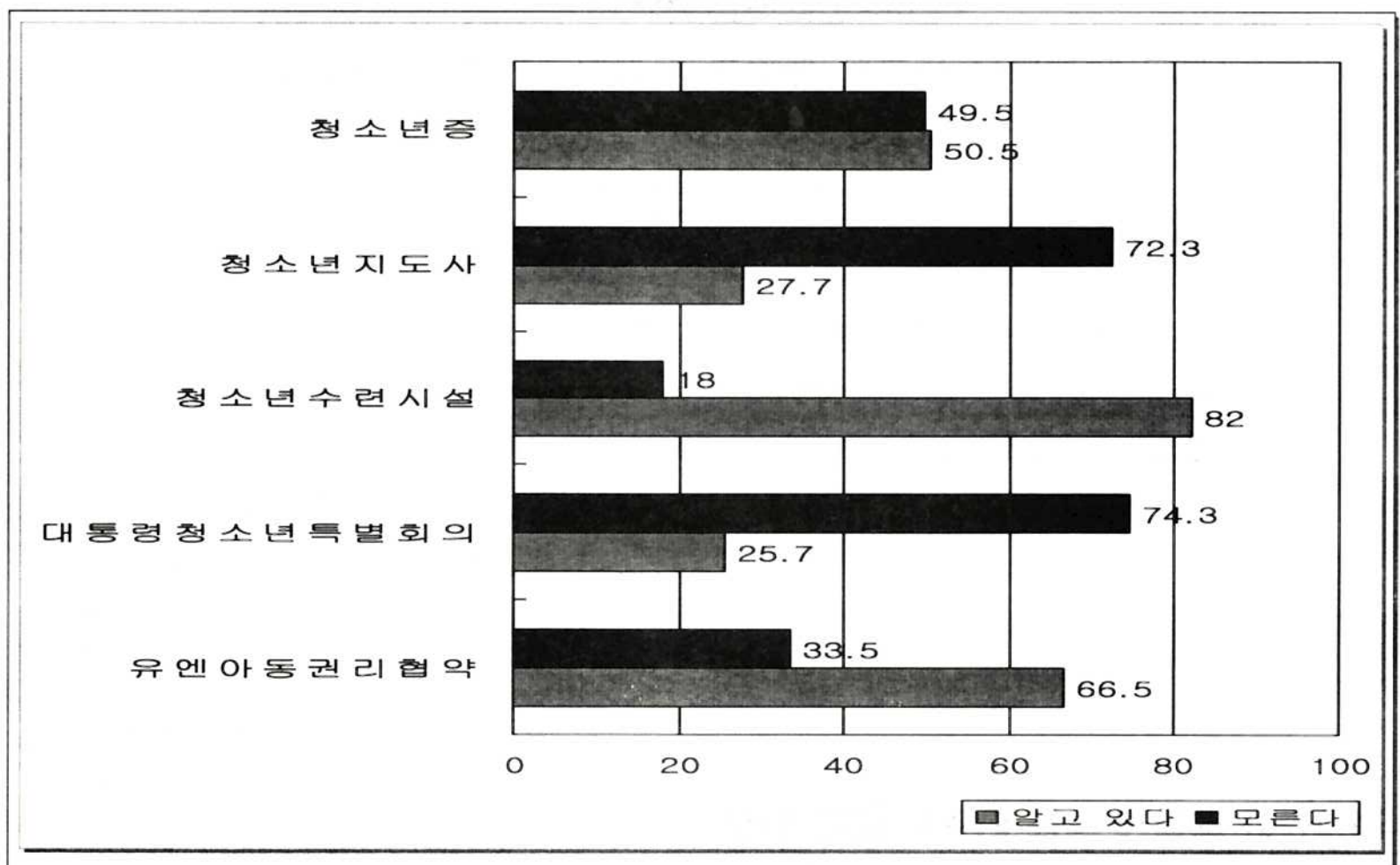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1. 청소년 정책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책기구, 활동에 대한 인지도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1. 청소년 정책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책기구, 활동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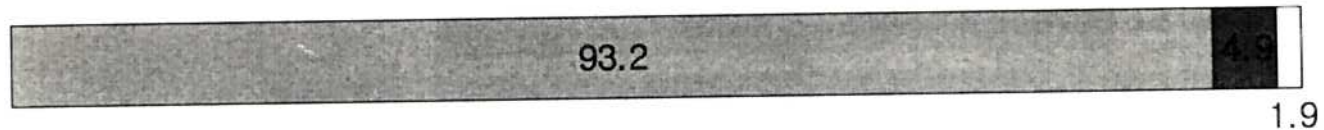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2. 청소년 권리

- 1)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2) 청소년들에게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 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 필요하다 ■ 그저 그렇다 □ 필요하지 않다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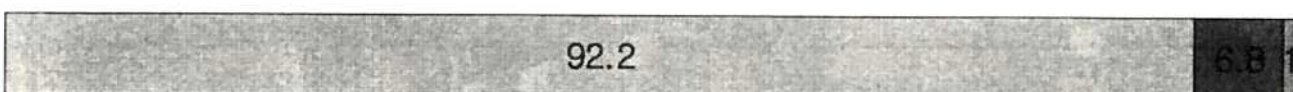
2. 청소년 권리

- 4) 청소년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 필요하다 ■ 그저 그렇다 □ 필요하지 않다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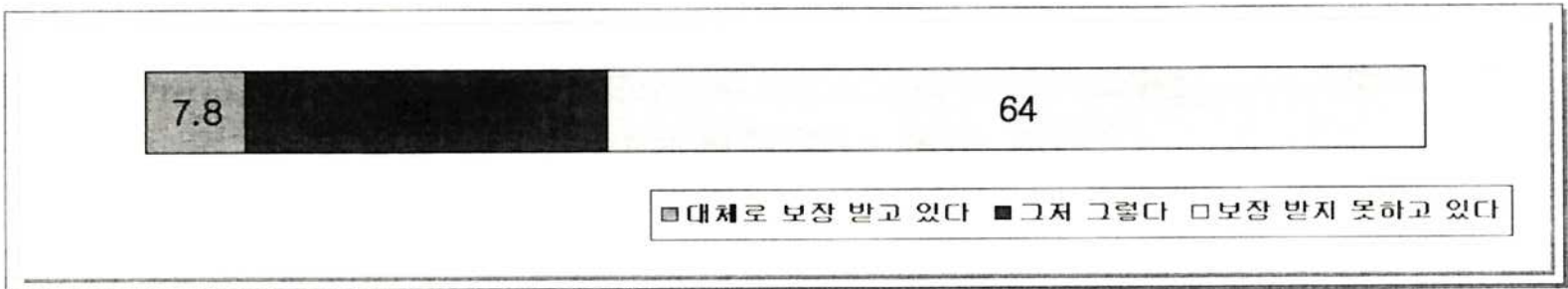
- 5)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화적 지원을 해야 한다.



■ 필요하다 ■ 그저 그렇다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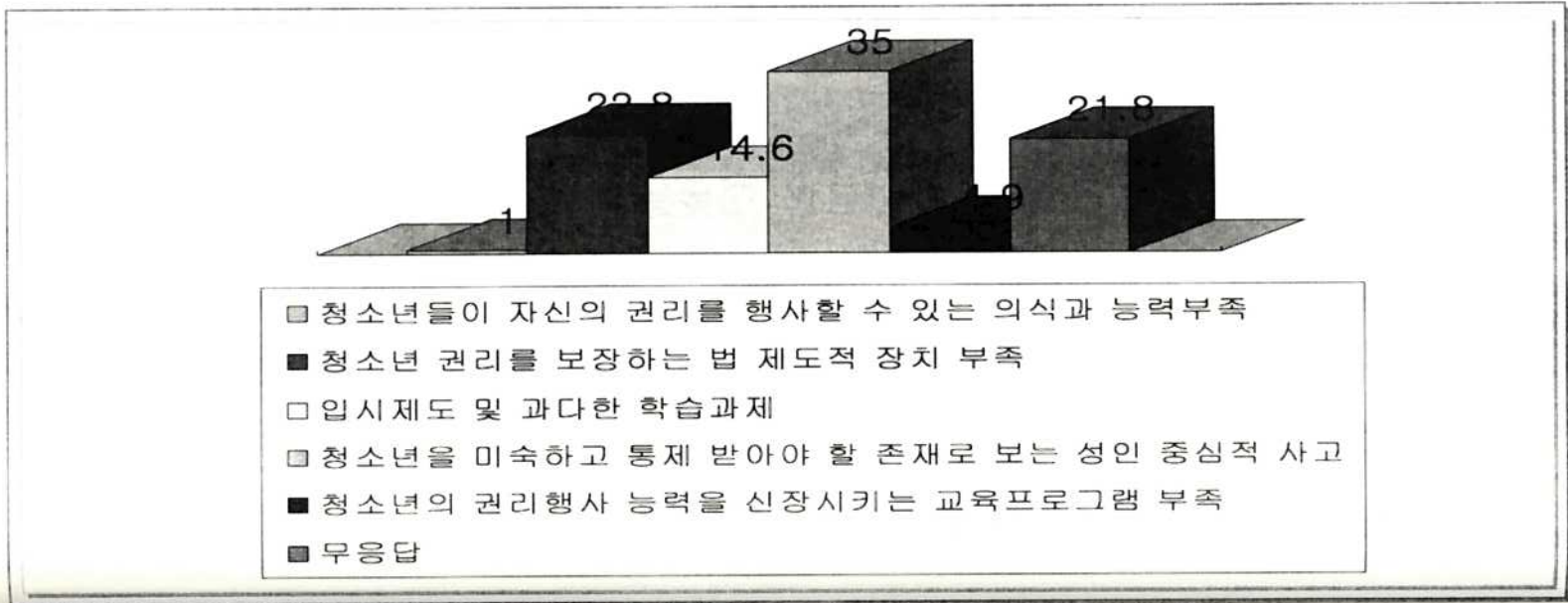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3. 17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 수준



4. 17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 수준

- 148 -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5. 청소년 선거권 부여

- 149 -

